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61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김 경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기대, 김기덕,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정진철,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의원(24명)

## 1. 제안이유

- 최근 다양한 업체 정보와 사용자 리뷰 검색 및 주문·결제 편의성 등으로 배달앱 플랫폼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배달앱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구제가 소비자의 피해나 배달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사업자간 경쟁에 따른 다른 사업자나 일부 이용자가 악의적 리뷰·별점을 부여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의 특성상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악성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규정함.(안 제8조 제7호의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u>&lt;신   설&gt;</u></p> <p>8. (생   략)</p> | <p>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br/>-----<br/>-----<br/>-----.</p> <p>1. ~ 7. (현행과 같음)</p> <p><u>7의2.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u></p> <p>8. (현행과 같음)</p> |